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 및 생활 만족도 연구

-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 기관 중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 미 경

2013년 8월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 및 생활 만족도 연구

-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 기관 중심 -

지도교수 박정환

김미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김미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인희



위원

梁銀休



위원

박정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국문초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 및 생활 만족도 연구

-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 기관 중심 -

김 미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학습자들의 생활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부설 평생교육 참여동기, 참여 만족도, 참여 후 생활만족도를 분석한다.

둘째,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넷째,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평생

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동기, 참여만족도,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별 상관관계를 설명하고자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들 요인의 측정도구서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및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신뢰도 검사 후 본 연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대학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립 거점대학 6개 대학을 선정하여 무선표집 방법으로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학습자 수 396명중 불성실한 응답자 34명을 제외한 36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된 자료는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 각 요인별 차이분석을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평생학습자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참여 만족도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거주지역,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참여동기에 따른 학력과 참여 만족도에 따른 거주지역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참여 만족도는 타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는 60대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으로는 전문대졸,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인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연령, 고소득, 고학력 등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평생교육에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참여동기와 참여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여동기의 '학문적 기대'는 참여 만족도의 '교육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있다. 즉 '학문적 기대'는 지식이 나 정보습득, 학문적 욕구 충족, 개인적 당면과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부지향적 기대'와 '외부지향적 기대'는 참여 만족도의 '학습동료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습동료와의 자주만남, 동료의식, 프로그램에 대한 동료와의 공감대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참여동기와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여동기의 '학문적 기대'는 참여후 생활 만족도의 '교육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부지향적 기대'는 '사회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외부지향적 기대'에서는 '지로 및 취업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 기대'는 새로운 지식 습득, 학문적 호기심, 정규교육 부족으로 인한 보충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내부지향적 기대'는 '교양함량, 삶의 활력, 장래의 풍족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지향적 기대'은 '취업, 승진 등 직업적 도움, 직장내 업무 효율성, 새로운 일이나 활동, 여가시간 활용, 인간관계 확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따른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여 후 생활만족도의 '진로 및 취업영역' 및 '사회적 영역'에 있어 참여 만족도는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적 영역'은 '교육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영역'과 '사회적 영역'은 '새로운 직장, 직장에서 승진, 출판, 전시회 및 작품발표,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육적 영역'은 '목표와 일치, 사회생활을 하는데 긍정적 효과, 지식 정보 습득, 학문적 욕구 충족, 개인적 당면과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2
3. 용어의 정의 .....	3
II. 이론적 배경 .....	5
1. 평생교육 .....	5
2.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	7
3. 평생교육의 실태 .....	11
4. 선행연구 고찰 .....	14
III. 연구 방법 .....	17
1. 연구 대상 .....	17
2. 연구 도구 .....	17
3. 자료 처리 .....	25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6
1. 표본의 특징 .....	26
2. 연구 내용 분석 .....	28
V. 결론 및 제언 .....	43
1. 요약 .....	43
2. 결론 .....	45
3. 제언 .....	47
참고문헌 .....	48

Abstract ..... 50

부록 1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만족도 설문지 ..... 53

부록 2 평생교육법 ..... 59



## 표 목 차

<표 II-1> 최근 5년간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	11
<표 II-2> 2012년도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 .....	12
<표 II-3> 2012년도 평생학습 참여 현황 .....	13
<표 III-1> 설문지 회수 현황 .....	17
<표 III-2> 설문지 문항 구성표 .....	18
<표 III-3>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동기 .....	19
<표 III-4> 참여동기에 따른 신뢰도 검증 결과 .....	20
<표 III-5>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22
<표 III-6> 참여 만족도에 따른 신뢰도 검증 결과 .....	23
<표 III-7>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 후 생활만족도 .....	24
<표 III-8> 참여 후생활만족도에 따른 신뢰도 검증 결과 .....	24
<표 IV-1>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분석 .....	27
<표 IV-2>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	28
<표 IV-3>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	28
<표 IV-4>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	29
<표 IV-5> 학력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	30
<표 IV-6>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	30
<표 IV-7>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	31
<표 IV-8> 성별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	33
<표 IV-9> 연령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	33
<표 IV-10> 학력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	34
<표 IV-11> 월평균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	35
<표 IV-12>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	36
<표 IV-13> 성별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	36
<표 IV-14> 연령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	37
<표 IV-15> 학력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	38

<표 IV-16> 월평균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 39  
<표 IV-17>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만족도 관계 ..... 40  
<표 IV-18>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 41  
<표 IV-19>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따른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 ..... 42

## 그 립 목 차

[그림 Ⅲ-1] 연구 모형 .....	18
----------------------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평생교육백서’에서는 지식기반사회는 『인적자원 기반사회이며, 평생학습사회』라고 하였으며, 평생학습사회는 누구나 학습에 즐거움으로 알고, 언제 어디서나 삶의 과정속에서 즐길 수 있는 사회라고 하였다.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를 통하여 질 높은 삶을 영위하고자 스스로 학습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끊임없는 자기역량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평생교육을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의 걸친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 하였다.

1983년 9월 “사회교육법시행령” 공포 후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시대적으로 폭넓은 평생교육의 기회가 요구되고 있다. 신은경(2009)은 오늘날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 지식·정보의 폭증, 직업세계의 구조적 변모와 전문화로 인하여 문화적 욕구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원화된 가치 등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혜숙(2008)은 학습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연령, 성별, 직장인과 전문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기성(2000)은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확보하고 이미 확보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대학의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한 대학의 주요기능은 연구와 교육,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기능, 직장인을 위한 계속교육, 대학결손 집단들을 위한 보상교육 등이 필요하다.

오늘날과 같이 격동하는 시대에는 대학 평생교육의 목표가 확고하여야 하며, 대학도 이제는 전문직업인을 위한 열린 순환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대폭 개방하는 체제로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김길자 외, 2000).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은 이화여자대학교가 1986년 1월 20일 설립신고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1990년 중반부터는 국립대학평생교육기관이 설립되어 2012년 5월 현재 403개교로 평생교육기관이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6,516개의 프로그램과 845,860명이 학습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 학습인원이 매년 전년도 대비 3%(2010년도 학습자수 883,196명, 2011 학습자수 856,432명, 2012년도 학습자수 845,860명)씩 감소하고 있다(평생교육통계자료집, 2012). 이러한 현상은 대학 부설평생교육기관에서 외형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독창성이 결여되고 백화점식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대학 평생교육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즉,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의 교육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고품질의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학습자들의 학습 만족도를 분석하고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생활만족도를 연구하여 프로그램 참여 후 생활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 및 생활 만족도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대학부설 평생교육 참여동기, 참여 만족도, 참여 후 생활만족도를 분석한다.

둘째,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넷째,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 3. 용어의 정의

#### 1) 평생교육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은 개인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수직적 차원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 수평적 차원을 통합하여 일컬어지고 있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사회, 창조·융통합사회 변천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새로운 삶의 질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으로 정의한다.

#### 2) 대학평생교육

대학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대학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하며, 대학에 축적되어 있는 우수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위, 비학위, 직업교육, 교양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 3) 성인학습자

성인학습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인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습하고 있는 자로 규정 할 수 있다(이숙원, 2002). 또한 성인학습자는 자발적인 학습동기로 인하여 자신의 학습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형식, 비형식, 무형식 등 모든 형태의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다.

#### 4) 학습참여동기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동기는 새로운 기술습득, 풍족한 삶, 사회적 인정, 신체적 건강증진 등으로 정의한다.

#### 5) 학습만족도

학습참여에 따른 학습자들의 학습목표 성취 정도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참여 환경, 교강사 자세,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직원서비스 만족도 등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 6) 학습참여 후 생활만족도

프로그램 참여 후 나의 생활만족도로서 진로 및 취업에 따른 영향, 사회적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의 정도를 말하며, 학습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인간적인 교류, 직업생활에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 학습을 통한 삶의 변화에 따른 만족도로 정의 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평생교육

####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개념은 1965년 UNESCO의 성인교육추진국 제위원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던 랭그랑(P.Lengrand)이 “인간이 직면하게 된 시대적 도전을 사회변화의 가속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과학기술 및 지식의 진보, 정치적 도전, 통신매체의 발달과 정보량의 증가, 여가시간의 증가,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위기, 정신과 육체의 불일치 및 성적 표현의 부조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이라고 주장한 계속교육에 관한 논문을 검토한 끝에 UNESCO 사무국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때부터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UNESCO, 1975; 한승진, 200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장진호(1985)는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능동적 계속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함께하는 공동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간화 교육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서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전 생애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데이브(R. H. Dave)는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류 정리하였다.

첫째, 평생교육 개념의 세 구성요소인 생(Life), 평생(Lifelong), 교육(Education)이라는 용어 하나 하나가 평생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용어들의 새로운 가치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학교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지속되는 과정으로 개인의 전 생애를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모든 단계의 교육이라고 하였으며, 형식적으로 계획된 교육형태 뿐만 아니라 비형식적이고 우발적인 학습까지 모두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평생교육은 가정교육과 지역사회교육이 중시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전 생애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교육기능이 수행된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의 엘리트(Elite)화를 지양하고 교육의 보편성을 추구하여 모든 인격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지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평생교육은 학습의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개별화된 학습을 통하여 개인별 편리한 시간에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회(opportunity), 동기(motivation), 교육력(educability) 등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행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을 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평생동안 계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랭그랑(P. Lengrand)은 ‘개인의 출생에서 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생애 걸친 교육’이라고 하였다. 데이브(R. H. Dave)는 평생교육을 계속교육으로 보고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삼위일체적 통합적 교육이다. 즉, 인간의 일생을 통한 교육의 과정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합하여 재조직함으로써 교육의 사회화와 사회의 교육화를 이룩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 2) 평생교육의 필요성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자아실현이다. 즉 인간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고 재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교육 중심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교육의 한계점이 들어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지식과 정보가 질적으로 확대되고 양적으로 팽창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성인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평생교육의 인지도는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추세이다.

21세기는 국가와 사회의 성장에 따른 의식계몽, 문맹탈피, 사회적응과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국가의 성장의 원동력인 학문적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는 창의적 교육, 열려있는 교육, 선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 2.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 1) 대학부설 평생교육의 개념 및 역사

대학부설 평생교육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조건에 관계없이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UNESCO(1979)에서는 대학평생교육을 대학이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소속 정규학생이 아닌 성인들의 생활을 위하여 교육활동을 비롯한 대학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한상훈, 1998; 조혜정, 2010).

대학은 국가와 사회에 존재하는 어느 기관보다도 고급 전문 지식인들이 집중해 있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및 설비와 같은 풍부한 물적자원을 보유

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이 지닌 방대한 인적·물적 교육자원과 교육적 노하우는 물론 대학의 높은 교육적 명성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을 원했지만 일차적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에게 제2의 새로운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이들로 하여금 학업적 성취를 누리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권두승, 2001; 최운실, 2003; 조혜정, 2010).

대학평생교육을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방하여 소속 정규 학생 이외의 지역사회 성인들에게 제공하는 학점은행제, 원격교육, 시간제 등록생, 독학학위 취득제도가 있는 한편, 비학점 과정으로서 대학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성인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해 주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운영,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 및 전문가 특별과정, 직업훈련과정, 보육교사양성과정 등이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김애련, 2004; 조혜정, 2010).

1920년대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가 농촌계몽운동을 벌였을 때 그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 당시 고등교육기관에 다녔던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야학을 설치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950 ~ 1960년대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농촌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교육, 농민, 경영자 대상으로 재교육 및 보수교육과 같은 확장교육을 실시해왔음을 볼 수 있다(신은정, 2009).

1970년도 들어서는 대학의 이름으로 대학 강좌를 공개 개설하였는데, 그 시효는 계명대학교의 주부대학 강좌다. 그 후 1982년 12월 31일 사회교육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대학의 사회 교육활동을 ‘사회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대학 사회교육이 본격화되면서 대학 정규학생이 아닌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9년 8월 31일 기존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칭되면서 사회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었으며, 2000년 3월 1일자로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평생교육은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 설치가 신고제에서 보고제로 전환되면서 평생교육 설치기관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제공, 교육부문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결과의 제도적 인정,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1998년 3월 학점은행제도를 도입·시행함에 따라 대학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2) 대학부설 평생교육의 기능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들은 전통적인 대학이념인 수월성과 학문적인 전통만을 고수하면서 대학의 평생 교육적 기능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고 부수적 기능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상아탑의 범주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대학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성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평생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학평생교육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사회봉사의 기능으로서 Kerr(1966)는 대학의 주요 3대 기능으로 연구, 교수, 사회봉사를 주장한 바 있다. Kerr는 대학을 사회봉사 기능과 학문적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공동체적 기능으로 일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일원화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케어복지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교육, 농·어업지도자과정, 농촌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의 대표적인 대학의 사회봉사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봉사 기능을 확대하여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대학의 계속교육 기능으로서 인생의 교육의 기회를 조기에 한정하지 말고 전 생애에 걸쳐 학습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 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과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대학 내의 정규학생 교육은 물론 대학 외 청소년, 성인 및 직장인에 대해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평생교육 기능을 발휘하여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순환교육을 통하여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주기적인 순환에 따른 대학교육과 지역사회의 위탁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 전문성 향상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보상 교육적 기능으로서 정규대학 교육의 기회를 원하면서도 받을 수 없었던 대학결손 집단들에게 제2의 보상적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학 제한 등으로 인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정규입학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학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 성인대상으로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주·야간제수업, 개방입학제도 등을 통하여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 할 수 있다.

### 3) 대학부설 평생교육의 운영 현황

우리나라는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교육시설 활용, 총장이 수여하는 수료증, 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조건들로 인하여 수강생 확보하는데는 별다른 노력 없이 학습자를 손쉽게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나 초등학교와 같은 관공서 중심의 평생교육 시설과 백화점 문화센터, 대형마트 문화센터, 언론기관 부설, 학원시설 등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생겨나고 이 기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면서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은 경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조혜정, 2010). 한국교육개발원 2012년도 평생교육통계편람에 근거하여 <표 I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도 까지는 학습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도는 전년도 대비 3.3%, 2012년도 전년도 대비 1.2%가 줄어들었다.

<표 II-1> 최근 5년간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구 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2008	378	19,416	615,923	13,351	1,523
2009	380	24,037	758,586	12,496	1,718
2010	388	25,568	883,196	14,139	1,782
2011	397	25,799	856,432	14,972	1,848
2012	403	26,516	845,860	15,825	1,881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cesi.kedic.re.kr>)

### 3. 평생교육의 실태

#### 1) 2012년도 우리나라 평생학습 실태

##### (1) 평생학습 참여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6%로 2011년도 평생학습 참여율(32.5%)에 비해 3.1% 증가하였다.

여성 참여율(39.4%)은 남성 참여율(31.8%)보다 7.6%가 높으며, 연령별 25세 ~ 34세(39.3%)가 가장 참여율이 높았다. 35세 ~ 44세(35.8%), 45세 ~ 54세(34.7), 55세 ~ 66세(31.5%)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는 대졸이상(40.9%)이 가장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33.6%), 중졸이하(16.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상태에서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 참여율(42.1%), 취업자(3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가구소득에서는 500만원 이상(44.1%)인 경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300만원 ~ 500만원(35.8%), 150만원 ~ 300만원(30.8%), 끝으로 1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단위로 보면 서울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37.3%)가 공동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26.6%)인 경우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즉, 2012년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에 의거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참여율이 높고, 연령층으로는 25세 ~ 34세, 최종학력으로는 대졸이상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월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구성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보다는 서울 및 광역시, 중소도시 지역이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학력자,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 2012년도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

(단위 : %)

구 분		2011년도 참여율	2012년도 참여율	증감
전 체		32.4	35.6	▲ 3.2
성 별	남자	30.7	31.8	▲ 1.1
	여자	34.0	39.4	▲ 5.4
연 령	25-34세	42.7	39.3	▽ 3.4
	35-44세	35.7	35.8	▲ 0.1
	45-54세	26.5	34.7	▲ 8.2
	55-64세	21.0	31.5	▲ 10.5
최 종 학 력	중졸이하	16.9	22.0	▲ 5.1
	고졸	25.2	33.6	▲ 8.4
	대졸이상	44.9	40.9	▽ 4.0
경 제 활 동 상 태	취업	31.5	33.0	▲ 1.5
	실업 및 비경제활동	27.8	42.1	▲ 8.0
월 가 구 소 득	150만원 미만	34.9	30.1	▲ 6.5
	150-300만원	23.6	30.8	▲ 5.2
	300-500만원	25.6	35.8	▽ 0.9
	500만원 이상	36.7	44.1	▲ 4.6
지 역	서울 및 광역시	39.5	37.3	▲ 2.3
	중소도시	35.0	37.3	▲ 5.5
	농어촌	31.8	26.6	▲ 0.9

※ 출처 : - 2012년 국가평생교육통계자료 조사 결과(교육과학기술부, 2012)

- 2011년 교육 참여자 : 9,701,816명, 2012년도 교육 참여자 : 10,365,797명

## (2) 기관별 참여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표 II-3>표에 의하면 평생학습 총 기관 수는 3,768개 기관, 프로그램 수 129,314개, 학습자 수 17,670,753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습자 수를 보면 원격평생교육원이 13,669,575(77.4%) 명의 가장 많은 학습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업장 평생교육원 1,036,910(5.5%), 평생학습장 903,143(5.1%),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 845,860명(4.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은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전체 77.5%를 차지하고 그 외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5.8% ~ 0.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 2012년도 평생학습 참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기 관		프 로 그 램		학 습 자		교 강 사		사 무 직 원	
유·초·중부설평생교육원	10	0.3	46	0.1	1,390	0.1	54	0.1	27	0.2
대학부설평생교육원	403	10.7	26,516	20.4	845,860	4.7	15,825	22.1	1,881	10.5
원격평생교육원	887	23.5	42,854	33.2	13,669,575	77.4	13,434	18.7	6,487	36.3
사업장평생교육원	357	9.5	28,140	21.7	1,036,910	5.8	18,235	25.5	1,426	7.9
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원	495	13.1	4,337	3.5	186,712	1.1	3,602	5.0	1,385	7.7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원	494	13.1	3,825	2.9	186,712	1.1	3,110	4.3	1,215	6.8
지식인력개발형태평생교육원	727	19.3	8,966	6.9	840,451	4.7	8,527	11.9	3,499	19.6
평생학습관	395	10.5	14,630	11.3	903,143	5.1	8,889	12.4	1,968	11.0
계	3,768	100	129,314	100	17,670,753	100	71,676	100	17,888	100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cesi.kedic.re.kr>)

## 2)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에 미치는 영향

김혜숙(2008)은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는 여러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습성과에 있어 지적성과에 대한 성취도 분석 결과 지적성과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1로 나타나고 있다. 지적성과 성



취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지적성장(M=3.71), 삶의 목적과 가치 인식(M=3.65), 자기주도학습능력(M=3.63), 사회변화적응능력과 자신감 증진(M=3.53) 순으로 나타나 평생교육 지적성과에 있어 지적성과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인 성장과 삶의 목적과 가치 등이 증대되며, 학습경험을 사회에 적용하는 여러가지 개인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철수(2009)는 대학평생교육기관에서의 만족도는 학습동기, 학습역량, 학습의 지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질이나 역량보다는 기관의 비전이나 수업 프로그램의 선택에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습 후의 만족도는 결국 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오세정(2012)은 성인학습자의 교육만족도와 참여지속은 학문적 경험이라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의 학문적 분위기가 좋을 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이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삶의 질과 지적성장, 학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학문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선행연구 고찰

McCue-Herliby(1997)는 학습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 학습 참여 및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즉 학습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교육참여 및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숙경(2008)은 평생학습자의 학습자 특성 변인을 학습에 대한 애착과 학습효능감, 학습가치로 명명하고 이와 참여동기 간의 상관에 대해 분석하면서 학습자 특성은 참여동기에 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학습가치, 학습애착, 학습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참여동기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은정(2009)은 전국에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중 7개교 500명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습 참여정도, 참여동기, 자기주도성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함께 참여동기와 자기주도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참여 만족도 중 ‘교육과정 만족’과 ‘직업 서비스 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배경요인에 따라 학습참여 유형과 생활만족도의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태준(2002)는 평생교육에의 참여동기는 취업, 전직, 자격취득이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이는 대학평생교육과 일반평생교육과의 차이 있는 역할 기대치 특성차를 드러내 주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비율은 높으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학습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혜정(2010)은 울산지역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 2개 학기 이상 연속 수강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평등한 학습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열어주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보상적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으나 지금은 대학밖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의 난립과 성인들의 학력 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설립 초기의 목표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승진(2005)는 충남 서북부 지역 7개 대학을 표본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는 바, 평생교육학습자들의 참여동기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생학습자의 참여동기에 따라 참여만족과 참여정도에서 나타나는 유의한 차이는 평생교육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요구 충족을 희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먼저 대학이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법 체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평생교육법 제8조)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평생교육 설치자는 지역사회주민들이 다양한 학습사회 및 프로그램 선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지역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명 및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오세정(2012)은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교육만족도에 있어서 학문적 경험과 교육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체 경험 .458, 사회적경험 .428로 교육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

의 교육만족도에는 학문적 경험, 공동체 경험, 사회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유능한 교수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교육기관에서 학문적 경험이 가치 있다고 느끼거나, 교수와의 공식적·비공식적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동료학습자와 사회적·정서적 유대감 등이 많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지은(2009)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대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취업과 자격증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관의 자율적이고 특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김혜숙(2008)은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는 여러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지적성과는 전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학습성과를 가져왔으며, 사회활동성과는 보통의 학습성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성인학습자는 평생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지적인 성장과 삶의 목적, 가치 등이 증대 되었으며, 학습경험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인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성취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이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로 얻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양적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분석도 잘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이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대한 성인학습자가 요구하는 세분화된 요인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참여 동기에 따른 학문적 기대, 내부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 참여 만족도에 따른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참여환경 만족도,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직원 서비스 만족도, 참여 후 생활 만족도에 따른 진로 및 취업 영역 만족도, 사회적 영역 만족도, 교육적 영역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대학 부설평생교육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통하여 학습만족도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 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제주지역 J대학, 부산 B대학, 경남 C대학, 경남 K대학, 강원 K대학, 강릉 K대학의 평생교육원 수강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 10월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중 394부가 회수가 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결측값이 많은 362부(91.9%)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III-1> 설문지 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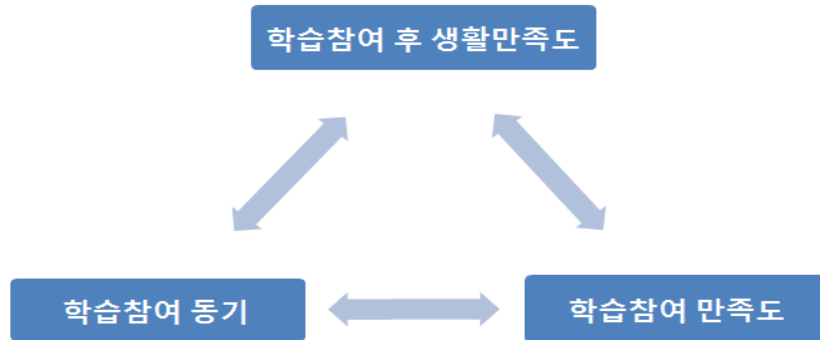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제주지역	J 대학	234	64.6
타 지역	B 대학	13	3.6
	C 대학	34	9.4
	K 대학	22	6.1
	K 대학	37	10.2
	K 대학	22	6.1
	계	128	35.4
합 계		362	100

#### 2. 연구 도구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대학평생교육 실시에 따른 만족도 분석을 위하여 학습자들의 배경적 특성, 학습 참여동기, 학습 만족도, 학습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수행하고자 연구모형 [그림 III-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II-1] 연구모형

##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 (1) 설문지 문항 구성표

<표 III-2> 설문지 문항 구성표

영역	세부내용	문항수
인구학적특징	거주지역,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월평균수입	7
	현재참가 강좌수, 지금까지 참여한 강좌수	2
참여동기	학문적 기대	5
	내부지향적 기대	5
	외부지향적 기대	7
참여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6
	교육방법 만족도	6
	교육참여환경 만족도	5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8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5
	직원 서비스 만족도	5
	진로 및 취업영역 만족도	5
참여후생활만족도	사회적 영역 만족도	5
	교육적 영역 만족도	5
	계	76

설문지는 문항 구성을 보면 <표 III-2>와 같이 학습 참여동기, 학습 참여 만족도, 학습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관련하여 76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한승진, 2005; 이철수, 2009; 김혜숙, 2008)를 토대로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재구성되었다.

## (2)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 동기

참여 만족도에 따른 만족도는 <표 III-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학문적 기대, 내부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학문적 기대로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습득, 다양한 지식 습득, 배우는 것 자체가 보람, 학문적 호기심, 정규교육에 따른 보충교육’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지향적 기대로서는 ‘교양함양, 나의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함, 장래의 풍족한 삶, 자녀교육에 도움,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가 되기 위함’이라는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외부지향적 기대로서는 ‘취업, 승진, 전직 등 직업적 도움, 직장내 업무 효율성 높이기 위함, 새로운 일이나 활동을 하기 위함, 여가시간 활용, 신체적 건강 증진,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함, 인간관계를 확대’ 등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표 III-3>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 동기

항 목	문 항	요 인
참 여 동 기	새로운 기술과 지식습득	학문적 기대
	다양한 지식 습득	
	배우는 것 자체 보람	
	학문적 호기심	
	정규교육에 따른 보충교육	
	교양 함양	내부지향적 기대
	나의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함	
	장래의 풍족한 삶	
	자녀교육에 도움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가 되기 위함	외부지향적 기대
	취업, 승진, 전직 등 직업적 도움	
	직장 내 업무 효율성 높이기 위함	
	새로운 일이나 활동을 하기 위함	
	여가시간 활용	
	신체적 건강 증진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함		
인간관계를 확대하기 위함		

<표 III-4>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참여동기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각 요인들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학문적 기대인 경우 .778, 내부지향적 기대 요인 .784, 외부지향적 기대 .810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III-4> 참여동기에 따른 신뢰도 검증 결과

변 인	문항수	신뢰도	
학 문 적 기 대	5	.778	.893
내 부 지 향 적 기 대	5	.784	
외 부 지 향 적 기 대	7	.810	

### (3)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참여 만족도는 <표 III-5>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참여환경 만족도,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직원 서비스 만족도 등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교육내용만족도는 '나의 목표일치, 사회생활을 하는데 긍정적 효과, 내가 원하는 바 충족, 지식이나 정보 습득, 학문적 욕구 충족, 개인적 당면과제 해결에 도움'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방법만족도는 '전체적인 교육방법 만족, 교재가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움, 교재내용이나 학습자 발달이 따른 관심과 지식수준 알맞게 구성됨, 참여중인 프로그램 교수방법 적절, 수업참여에 관한 이해확인과 보충설명 제시가 충분함,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와 학습자 상호작용'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참여환경 만족도는 '강의실 환경, 주차장, 매점, 식당 등 부대시설 구비, 강의실 분위기, 학습자의 강의집중 정도, 교육기관에서 학문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는 '학습자의 욕구와 특성 파악, 교강사와 학습자의 이해, 학습자의 흥미 유발, 학습자의 지적성장, 교강사의 담당 교육분야 전문성, 수

업 진행방식 합리적, 교강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교강사가 개설하는 다른 강좌 재수강'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동료와의 상호작용 만족도는 '강의시간 외 동료 학습자의 교류, 개인적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동료, 새로운 강좌를 등록할 때 함께 참여할 동료, 동료 학습자에 대한 동료의식, 동료학습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 서비스 만족도는 '교육정보에 대한 안내 다양성, 전화 및 방문 친절 응대, 학습자의 불만 및 요구사항 신속 처리, 학습자에 대한 격려와 신뢰, 학습시설과 기자재 이용 편의성'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5>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항 목	문 항	요 인
참 여 만 족 도	나의 목표일치	교육내용 만족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긍정적 효과	
	내가 원하는 바 충족	
	지식이나 정보 습득	
	학문적 욕구 충족	
	개인적 당면과제 해결에 도움	
	전체적인 교육방법 만족	교육방법 만족도
	교재가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움	
	교재내용이나 학습자 발달이 따른 관심과 지식수준	
	참여중인 프로그램 교수방법 적절	
	수업참여에 관한 이해확인외 보충설명 제시	
	학습목표달성을 위한 교수와 학습자 상호작용	
	강의실 환경	교육참여환경 만족도
	주차장, 매점, 식당 등 부대시설 구비	
	강의실 분위기	
	학습자의 강의집중 정도	
	교육기관에서 학문적 분위기	
	학습자의 욕구와 특성 파악,	
	교강사와 학습자의 이해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학습자의 흥미 유발	
	학습자의 지적성장	
	교강사의 담당 교육분야 전문성	
	수업 진행방식 합리적	
	교강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교강사가 개설하는 다른 강좌 재수강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강의시간외 동료 학습자의 교류	
	개인적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동료	
	새로운 강좌를 등록할 때 함께 참여할 동료	
	동료 학습자에 대한 동료의식	
동료학습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정보에 대한 안내 다양성	직원 서비스 만족도	
전화 및 방문 친절 응대		
학습자의 불만 및 요구사항 신속 처리		
학습자에 대한 격려와 신뢰		
학습시설과 기자재 이용 편의성		

<표 III-6>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참여 만족도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각 요인들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이 교육내용 만족도인 경우 .910, 교육방법 만족도 요인 .938, 교육참여 환경 만족도 .860, 교강사 자세에 대한 만족도 요인 .954,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908, 직원서비스 만족도인 경우 .924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III-6> 참여 만족도에 따른 신뢰도 검증 결과

변 인	문항수	신뢰도
교 육 내 용	6	.910
교 육 방 법	6	.938
교 육 참 여 환 경	5	.860
교 강 사 자 세	8	.954
학 습 동 료 와 상 호 작 용	5	.908
직 원 서 비 스	5	.924

.961

#### (4)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 후 생활 만족도

참여 후 생활만족도는 <표 III-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진로 및 취업영역 만족도, 사회적 영역 만족도, 교육적 영역 만족도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 및 취업영역 만족도는 '새로운 직장을 얻는데 도움, 직장에서 승진이나 보수에 도움, 개인, 가정 등 경제적 도움, 출판, 전시회, 작품발표회 등을 통한 진가확대,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 제공'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영역 만족도는 '예전보다 동료 주변사람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는다, 타인들과의 관계 맺는 능력 향상, 사회활동이나 내가 배운 학습경험 적용, 나의 모임에 있어 지도자 역할 여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적 영역 만족도는 '내가 지적으로 성장, 남의 권유나 지시보다는 스스로 학

습능력 생김,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갖음, 삶에 대한 목적과 가치 인식,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7>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 후 생활 만족도

항 목	문 항	요 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새로운 직장을 얻는데 도움	진로 및 취업 영역 만족도
	직장에서 승진이나 보수에 도움	
	개인, 가정 등 경제적으로 도움	
	출판, 전시회, 작품발표회 등을 통한 진가확대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 제공	
	예전보다 동료 주변사람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음	사회적 영역 만족도
	타인들과의 관계 맺는 능력 향상	
	사회활동이나 내가 배운 학습경험 적용	
	나의 모임에 있어 지도자 역할 여부	
	다른사람을 더 이해 할수 있음	교육적 영역 만족도
	내가 지적으로 성장	
	남의 권유나 지시보다는 스스로 학습능력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삶에 대한 목적과 가치 인식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는 자심감		

<표 III-8>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참여 후 생활만족도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각 요인들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α값이 진로 및 취업영역인 경우 .892, 사회적 영역인 경우 .897, 교육적 영역인 경우 .928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III-8>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따른 신뢰도 검증 결과

변 인	문항수	신뢰도	
진 로 및 취 업 영 역	5	.892	.936
사 회 적 영 역	5	.897	
교 육 적 영 역	5	.928	

###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와 참여 만족도, 참여동기와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 참여 만족도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부설 평생교육 학습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참여 만족도,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표본의 특징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표 IV-1>과 같다. 성별 분포로는 여성이 62.7%로 남성의 37.3%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층은 40대가 33.4%, 30대 21.0%, 50대 24.0%, 20대 13.%, 60대 8.0%로 순으로 40대가 평생교육 참여율이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 24.9%, 기혼 75.1%로 나타남에 따라 기혼이 50%이상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 59.1%로 가장 많이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 19.3%, 대학원졸 11.3%, 고졸 10.2%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2.6%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만원이상 ~ 300만원 미만이 29.8%, 400만원 이상 14.6%, 100만원 미만 10.8%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인적 배경별 응답자 현황

<표 IV-1>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분석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거 주 지 역	제주지역	234	64.6
	타지역	128	35.4
성 별	남	135	37.3
	여	227	62.7
연 령	20대	49	13.5
	30대	76	21.0
	40대	121	33.4
	50대	87	24.0
	60대	29	8.0
결 혼 상 태	기혼	272	75.1
	미혼	90	24.9
학 력	고졸	37	10.2
	전문대졸	70	19.3
	대학졸	214	59.1
	대학원졸이상	41	11.3
월 평 균 수 입	100만원 미만	39	10.8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18	32.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8	29.8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4	12.2
	400만원 이상	53	14.6
현 재 다 니 고 계 신 참 여 강 좌 수	1회	321	88.7
	2회	33	9.1
	3회	5	1.4
	4회 이상	3	0.9
지 금 까 지 참 여 한 강 좌 수	1회	211	58.3
	2회	82	22.7
	3회	38	10.5
	4회 이상	31	8.5
계		362	100

## 2. 연구내용 분석

### 1) 참여동기의 분석

#### (1)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IV-2>와 같다.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문적 기대’, ‘내부 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타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이 대체로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구 분	제주지역	타지역	t	p
	M(SD)	M(SD)		
학 문 적 기 대	4.01(.688)	3.92(.681)	1.157	.248
내 부 지 향 적 기 대	3.72(.807)	3.719(.749)	.069	.945
외 부 지 향 적 기 대	3.18(.857)	3.40(.790)	-2.376	.018

#### (2)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IV-3>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문적 기대’, ‘내부 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대체로 남성이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구 분	남	여	t	p
	M(SD)	M(SD)		
학 문 적 기 대	4.0(.740)	3.96(.653)	.594	.132
내 부 지 향 적 기 대	3.71(.762)	3.71(.801)	-.040	.545
외 부 지 향 적 기 대	3.31(.883)	3.23(.807)	-.852	.354

(3)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IV-4>와 같다.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부지향적 기대’에서  $F=3.994$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외부지향적 기대’에서 ‘30대’( $M=3.54$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M=3.31$ ), ‘40대’( $M=3.26$ ), ‘60대’( $M=3.08$ ), 그리고 ‘50대’( $M=3.05$ )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동기 차이’에 있어 ‘학문적 기대’와 ‘내부지향적 기대’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외부지향적 기대’에서는 30대가 평균 3.54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취업, 승진 등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F	p
	M(SD)	M(SD)	M(SD)	M(SD)	M(SD)		
학 문 적 기 대	4.00(.551)	4.08(.635)	3.97(.693)	3.83(.721)	4.11(.836)	1.176	.136
내부지향적기대	3.56(.751)	3.83(.781)	3.77(.766)	3.57(.764)	3.88(.931)	2.103	.080
외부지향적기대	3.31(.702)	3.54(.762)	3.26(.816)	3.05(.841)	3.08(1.94)	3.994	.003**

\*\*  $p < .01$

(4) 학력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학력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IV-5>와 같다. ‘학력에 따른 참여동



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부지향적 기대'에서  $F=5.561$ 로  $p < .01$ , '내부지향적 기대'에서  $F=7.515$ 로  $p < .001$ , '외부지향적 기대'에서  $F=9.490$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기대'에서 '전문대졸'(M=4.2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M=3.98), '대학원졸'(M=3.95), 그리고 '대학졸'(M=3.91)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지향적 기대'에서 '전문대졸'(M=4.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M=3.63), '대졸'(M=3.62), 그리고 '대학원졸'(M=3.6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부지향적 기대'에서 '전문대졸'(M=3.7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M=3.25), '대졸'(M=3.18), 그리고 '대학원졸'(M=2.9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에 있어 '학문적 기대', '내부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에 대한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전문대졸'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평생교육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IV-5> 학력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구 분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F	p
	M(SD)	M(SD)	M(SD)	M(SD)		
학 문 적 기 대	3.95(.755)	4.27(.650)	3.90(.651)	3.91(.747)	5.561	.001**
내부지향적기대	3.63(.854)	4.10(.762)	3.62(.760)	3.60(.711)	7.515	.000***
외부지향적기대	3.25(.904)	3.70(.865)	3.18(.764)	2.96(.840)	9.490	.000***

\*\*  $p < .01$ , \*\*\*  $p < .001$

#### (5)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분석 결과 <표 IV-6>와 같다.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문적 기대'에서  $F=3.545$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기대'에서 '100만원미만과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M=4.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M=4.0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M=4.00), '400만원 이상'(M=3.65)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동기를 분석한 결과 ‘내부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학문적 기대’에서는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 200만원 미만’인 경우 평균 4.04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인 경우 새로운 지식습득, 배우는 것에 대한 보람, 정규학교 부족으로 인한 보충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6>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동기 차이

구 분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F	p
	M(SD)	M(SD)	M(SD)	M(SD)	M(SD)		
학 문 적 기 대	4.04(.676)	4.04(.679)	4.03(.643)	4.00(.691)	3.65(.726)	3.545	.007**
내부지향적기대	3.70(.796)	3.74(.801)	3.82(.840)	3.61(.741)	3.54(.642)	1.347	.252
외부지향적 기대	3.32(.798)	3.38(.838)	3.33(.798)	3.01(.878)	3.03(.839)	2.879	.023

\*\* p < .01

## 2) 참여 만족도의 검증

### (1) 지역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표 IV-7>와 같다.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육방법 만족도’에서  $t=3.261$ 로  $p<.001$ , ‘교육참여환경 만족도’에서  $t=3.467$ 로  $p<.01$ ,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에서  $t=5.225$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 만족도’에서 ‘제주지역’(M=4.01), ‘타지역’(M=3.75) 순으로 참여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참여환경 만족도’에서 ‘제주지역’(M=4.05), ‘타지역’(M=3.82) 순으로 참여 만족도가 높았다.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에서 ‘제주지역’(M=4.30), ‘타지역’(M=3.9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참여환경 만족도’,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참여 만족도는 ‘타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7>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구 분	제주지역	타지역	t	p
	M(SD)	M(SD)		
교육 내용 만족도	3.95(.709)	3.80(.692)	1.962	.051
교육 방법 만족도	4.01(.700)	3.75(.834)	3.261	.001***
교육 참여 환경 만족도	4.05(.595)	3.82(.614)	3.467	.004**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4.30(.601)	3.93(.735)	5.225	.000***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3.21(.926)	3.37(.855)	-1.582	.115
직원 서비스 만족도	3.73(.798)	3.74(.824)	-.132	.895

\*\* p < .01, \*\*\* p < .001

(2) 성별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성별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표 IV-8>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원 서비스 만족도’에서 t=2.810로 p<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남’(M=3.88), ‘여’(M=3.46)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참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참여환경 만족도’,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직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남자’ 평균 3.88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남자’가 대체로 교육정보 안내의 다양성, 전화 및 방문 친절에 따른 응대 등 기관에 따른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성별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구 분	남	여	t	p
	M(SD)	M(SD)		
교육 내용 만족도	3.98(.717)	3.85(.696)	1.696	.091
교육 방법 만족도	3.98(.777)	3.89(.749)	1.118	.264
교육 참여 환경 만족도	4.01(.618)	3.94(.605)	1.113	.266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4.25(.643)	4.13(.691)	1.607	.109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3.40(.956)	3.19(.864)	2.189	.029
직원 서비스 만족도	3.88(.767)	3.64(.817)	2.810	.005**

\*\* p < .01

(3) 연령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연령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표 IV-9>와 같다. ‘연령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참여환경 만족도’,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직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IV-9> 연령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F	p
	M(SD)	M(SD)	M(SD)	M(SD)	M(SD)		
교육 내용 만족도	3.93(.663)	3.96(.617)	3.89(.676)	3.83(.748)	3.93(.972)	.376	.826
교육 방법 만족도	3.98(.775)	3.87(.834)	3.87(.728)	3.96(.671)	4.07(.919)	.652	.626
교육 참여 환경 만족도	3.80(.612)	3.91(.605)	3.97(.596)	4.06(.536)	4.14(.816)	2.152	.074
교 강 사 자 세 에 관 한 만 족 도	4.14(.709)	4.05(.674)	4.20(.631)	4.25(.619)	4.20(.920)	.976	.421
학 습 동 료 와 상 호 작 용 만 족 도	2.91(.884)	3.39(.894)	3.31(.848)	3.23(.900)	3.46(1.077)	2.766	.027
직 원 서 비 스 만 족 도	3.50(.736)	3.84(.730)	3.70(.834)	3.73(.764)	3.95(1.033)	1.969	.099

(4) 학력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학력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표 IV-10>과 같다. ‘학력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에서  $F=5.633$ 로  $p < .001$ , ‘직원 서비스 만족도’에서  $t=3.463$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참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참여환경 만족도’,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에서 ‘전문대졸’인 경우 평균 3.64로 높게 나타나 학습동료와의 상호관계, 동료의식, 동료학습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 알 수 있으며, ‘직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도 ‘전문대졸’이 평균 3.93로 높게 나타나 다양한 정보안내, 전화 및 방문시 친절도, 학습자들에 대한 격려 및 신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학력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구 분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F	p
	M(SD)	M(SD)	M(SD)	M(SD)		
교육내용만족도	3.76(.824)	4.06(.787)	3.85(.658)	4.02(.645)	2.670	.047
교육방법만족도	3.87(.864)	4.12(.705)	3.85(.714)	4.02(.926)	2.539	.056
교육참여환경만족도	3.97(.796)	4.05(.629)	3.93(.559)	4.01(.651)	.737	.530
교강사자세에관한만족도	4.11(.798)	4.26(.624)	4.12(.678)	4.36(.589)	2.001	.113
학습동료와상호작용만족도	3.34(1.72)	3.64(.844)	3.15(.867)	3.16(.877)	5.633	.001***
직원서비스만족도	3.84(.983)	3.93(.703)	3.62(.786)	3.88(.829)	3.463	.017**

\*\*  $p < .01$ , \*\*\*  $p < .001$

#### (5)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표 IV-11>와 같다.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에서  $F=3.661$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에서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M=3.46)인 경우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M=3.3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M=3.28), ‘400만원 이상’(M=3.04), ‘100만원 미만’(M=2.92) 순으로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참여환경 만족도’,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직원 서비스 만족도’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에서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인 경우 평균 3.46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1> 월평균에 따른 참여 만족도 차이

구 분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 400만원미만	400만원 이상	F	p
	M(SD)	M(SD)	M(SD)	M(SD)	M(SD)		
교육내용만족도	3.82(.712)	3.95(.746)	3.90(.682)	3.84(.650)	3.92(.717)	.372	.828
교육방법만족도	3.89(.798)	3.97(.746)	3.85(.789)	3.89(.747)	4.00(.724)	.577	.680
교육참여환경만족도	3.93(.550)	3.97(.626)	3.96(.591)	4.00(.633)	3.98(.657)	.101	.982
교강사자세에관한 만족도	4.13(.713)	4.19(.681)	4.15(.711)	4.20(.628)	4.19(.613)	.106	.980
학습동료와상호작용 만족도	2.92(.969)	3.28(.897)	3.46(.843)	3.33(.921)	3.04(.886)	3.661	.006**
직원서비스만족도	3.66(.616)	3.66(.836)	3.83(.800)	3.70(.851)	3.78(.840)	.803	.524

\*\* p < .01

### 3) 참여 후 생활 만족도의 검증

#### (1)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표 IV-12>와 같다.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진로 및 취업영역’, ‘사회적 영역’, ‘교육적 영역’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표 IV-12> 거주지역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구 분	제주	타지역	t	p
	M(SD)	M(SD)		
진 로 및 취 업 영 역	2.71(1.091)	2.87(1.106)	-1.344	.180
사 회 적 영 역	3.39(.929)	3.43(.850)	-.417	.677
교 육 적 영 역	3.76(.917)	3.70(.768)	.551	.582

(2) 성별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성별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표 IV-1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영역’에서  $t=3.11$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에서 ‘남’(M=3.43), ‘여’(M=3.39)순으로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진로 및 취업영역’, ‘교육적 영역’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사회적 영역’에서 ‘남자’인 경우 평균 3.43으로 높게 나타나 주변사람으로부터 인정, 타인에 대한 관계, 지도자로서 역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3> 성별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구 분	남	여	t	p
	M(SD)	M(SD)		
진 로 및 취 업 영 역	2.84(1.146)	2.72(1.068)	1.017	.319
사 회 적 영 역	3.43(1.013)	3.39(.830)	.311	.020**
교 육 적 영 역	3.69(.980)	3.77(.793)	-.842	.074

\*\*  $p < .05$

(3) 연령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연령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표 IV-14>과 같다. ‘연령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  $F=3.726$ 로  $p < .05$ , '사회적 영역'에서  $F=3.426$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 '40대'(M=2.92)가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M=2.91), '30대'(M=2.90), '60대'(M=2.46), '50대'(M=2.44) 순으로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영역', '교육적 영역'에 서는 의미가 없으며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는 '40대'가 평균 2.92로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직장 얻는 데에 대한 도움, 직장에서 승진기회, 상급학교 진학에 기회 제공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14> 연령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F	p
	M(SD)	M(SD)	M(SD)	M(SD)	M(SD)		
진로 및 취업 영역	291(.705)	290(.172)	292(.926)	244(1.303)	246(1.445)	3.726	.006**
사 회 적 영 역	342(.609)	347(.822)	350(.748)	324(1.136)	329(1.229)	1.288	.274
교 육 적 영 역	389(.729)	380(.645)	386(.673)	347(1.128)	363(1.207)	3.426	.009*

\*\*  $p < .05$

#### (4) 학력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학력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표 IV-15>과 같다. '학력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  $F=6.176$ 로  $p < .001$ , '사회적 영역'에서  $F=9.153$ 로  $p < .001$ , '교육적 영역'에서  $F=4.896$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 '전문대졸'(M=3.13)인 경우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대학졸'(M=2.76), '고졸'(M=2.68), '대학원졸'(M=2.23) 순으로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전문대졸'(M=3.89)이 참여 후 생활만족도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대학졸’(M=3.32), ‘고졸’(M=3.25), ‘대학원졸’(M=3.17) 순으로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영역’에서는 ‘전문대졸’(M=4.02)이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대학졸’(M=3.72), ‘대학원졸’(M=3.69), ‘고졸’(M=3.37) 순으로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 ‘전문대졸’이 평균 3.1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영역’에서 역시 평균 3.8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적 영역’에서도 평균 4.02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학력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는 ‘전문대졸’인 경우 평생교육 참여 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15> 학력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구 분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F	p
	M(SD)	M(SD)	M(SD)	M(SD)		
진로 및 취업 영역	2.68(1.344)	3.13(1.031)	2.76(1.025)	2.23(1.133)	6.176	.000***
사회적 영역	3.25(1.172)	3.89(.686)	3.32(.823)	3.17(1.072)	9.153	.000***
교육적 영역	3.37(1.220)	4.02(.685)	3.72(.766)	3.69(1.114)	4.896	.002**

\*\* p < .01, \*\*\* p < .001

#### (5)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표 IV-16>과 같다.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 F=3.894로 p<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M=2.90)이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100만원 미만’(M=2.8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M=2.89),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M=2.54), ‘400만원 이상’(M=2.30) 순으로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 평균 2.90으로 높게 나타나 중하위

계층의 참여 후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16> 월평균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차이

구 분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F	p
	M(SD)	M(SD)	M(SD)	M(SD)	M(SD)		
진로및취업영역	289(.842)	290(1.107)	289(1.012)	254(1.288)	230(1.122)	3.894	.004*
사 회 적 영 역	3.43(.797)	3.43(.923)	3.51(.838)	3.25(.927)	3.25(1.015)	1.118	.348
교 육 적 영 역	3.87(.707)	3.74(.940)	3.79(.789)	3.69(.969)	3.57(.871)	.839	.501

\* p < .05

#### 4)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IV-17>와 같다. ‘학문적 기대’에 있어서 참여 만족도는 ‘교육내용 만족도’가 .613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 습득, 학문적 호기심, 정규교육 부족으로 인한 보충교육 등은 ‘교육내용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내부지향적 기대’의 참여 만족도는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가 .525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양함량, 나의 삶의 활력, 장래의 풍족한 삶 등은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와의 상호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부지향적 기대’의 참여 만족도는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가 .55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 승진 등 직업적 도움, 직장내 업무 효율성, 새로운 일이나 활동, 여가시간 활용, 사회에서 인정, 인간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와의 상호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여 만족도에 따른 참여동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IV-17>와 같다. 참여 만족도의 요인인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참여 환경 만족도’, ‘교강사에 관한 만족도’, ‘직원 서비스 만족’에 따른 참여동기는 ‘학문적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참여 만족도의 요인인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는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에 관련된 사항인 경우는 지식습득, 삶의 보람, 학문적 욕구 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동료와의 관계는 취업, 승진 등 직업적 도움, 새로운 활동, 여가시간 활용, 사회적 인정, 인간관계 확대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표 IV-17>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만족도 관계

(N : 362)

구 분		학문적 기대	내부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
교육 내용 만족도	상관계수	.613	.482	.391
	유의 확률	.000***	.000***	.000***
교육 방법 만족도	상관계수	.477	.367	.285
	유의 확률	.000***	.000***	.000***
교육 참여 환경 만족도	상관계수	.471	.383	.224
	유의 확률	.000***	.000***	.000***
교강사자세에 관한 만족도	상관계수	.425	.321	.166
	유의 확률	.000***	.000***	.002**
학습동료와 상호작용만족도	상관계수	.425	.525	.558
	유의 확률	.000***	.000***	.000***
직원 서비스 만족도	상관계수	.457	.443	.399
	유의 확률	.000***	.000***	.000***

\*\* p < .01, \*\*\* p < .001

### 5)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IV-18>와 같다. ‘학문적 기대’에 있어서 참여 후 생활만족도는 ‘교육적 영역’이 .511로 높게 나타나 ‘학문적 기대’의 하부요인인 새로운 지식 습득, 학문적 호기심, 정규교육 부족으로 인한 보충교육이 ‘교육적 영역’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내부지향적 기대’에 있어서 참여 후 만족도는 ‘사회적 영역’이 .430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내부지향적 기대’의 하부요인인 ‘교양함량, 나의 삶의 활력, 장래의 풍족한 삶’을 위하여 ‘사회적 영역’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외부지향적 기대’에 있어서 참여 후 만족도는 ‘진로 및 취업 영역’이 .585로 높게 나타나 ‘외부지향적 기대’의 하부요

인인 ‘취업, 승진 등 직업적 도움, 직장내 업무 효율성, 새로운 일이나 활동, 여가 시간 활용, 사회에서 인정, 인간관계 확대’를 위하여 ‘진로 및 취업영역’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따른 참여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IV-18>와 같다. ‘진로 및 취업영역’과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참여동기는 ‘외부지향적 기대’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직장을 얻는데 도움, 직장내 승진이나 보수,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 동료와 주변사람에 대한 인정, 타인들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교육적 영역’에 있어서 참여동기는 ‘학문적 기대’가 .511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교육적 영역’에 대한 하부요인으로서 ‘지적성장,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력, 삶에 목적과 가치 인식’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표 IV-18>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N : 362)

구 분		학문적 기대	내부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
진로 및 취업 영역	상관계수	.351	.404	.585
	유의확률	.000***	.000***	.000***
사회적 영역	상관계수	.430	.465	.542
	유의확률	.000***	.000***	.000***
교육적 영역	상관계수	.511	.495	.456
	유의확률	.000***	.000***	.000***

\*\*\* p < .001

#### 6)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따른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따른 참여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IV-19>와 같다. ‘진로 및 취업영역’에 있어서 참여 만족도가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490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진로 및 취업영역’의 하부요인인 ‘새로운 직장, 직장내에서 승진, 출판, 전시회 등 작품발표,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와의 관계를 시사

하고 있다.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참여 만족도가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552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영역’의 하부요인인 ‘동료사람들에 대한 인정, 타인들과 관계, 지도자 역할, 다른사람들에 대한 이해’와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교육적 영역’에 있어서 참여 만족도는 ‘교육내용 만족도’가 .627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교육내용 만족도’의 하부요인인 ‘나의 목표와 일치, 사회생활을 하는데 긍정적 효과, 필요한 지식 정보 습득, 학문적 욕구 충족, 개인적 당면과제 해결’로 인하여 ‘교육내용 만족도’와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참여 만족도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IV-19>와 같다.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참여환경 만족도’,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직원서비스 만족도’ 모두 ‘교육적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평생교육 참여 후 생활만족도는 ‘교육적 영역’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9>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따른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

(N : 362)

구 분		진로 및 취업영역	사회적 영역	교육적 영역
교육내용만족도	상관계수	.288	.432	.627
	유의확률	.000***	.000***	.000***
교육방법만족도	상관계수	.212	.373	.522
	유의확률	.000***	.000***	.000***
교육참여환경만족도	상관계수	.176	.320	.436
	유의확률	.001***	.000***	.000***
교강사자세에관한만족도	상관계수	.123	.288	.461
	유의확률	.019*	.000***	.000***
학습동료와상호작용만족도	상관계수	.490	.552	.464
	유의확률	.000***	.000***	.000***
직원서비스만족도	상관계수	.345	.453	.471
	유의확률	.000***	.000***	.000***

\* p < .05,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대상 학습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참여동기, 참여 만족도, 참여 후 생활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파악하고 학습자들의 생활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학습 및 생활 만족도 분석을 위하여 제주지역 J대학, 부산 B대학, 경남 C대학, 경남 K대학, 강원 K대학, 강릉 K대학의 평생교육원 수강자 500여명을 설문조사 실시결과 총 500부중 394부가 회수가 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값이 많은 362부(91.9%)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1)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내용으로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지역’(M=3.95), ‘타지역’(M=3.79)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지역’의 참여 만족도가 평균 0.16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M=3.98), ‘여성’(M=3.84)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보다는 ‘남성’이 참여 만족도가 평균 0.1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M=4.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M=3.91), ‘40대’(M=3.89), ‘30대’(M=3.87), ‘20대’(M=3.76)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20대’와 ‘60대 이상’의 차이는 평균 0.35을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M=4.0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졸’(M=3.98), ‘대졸’(M=3.82) 순으로 나타나 전문대졸과 대졸 차이는 평균 0.23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월 평균 수입’별로 보면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M=3.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M=3.87),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M=3.9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M=3.90)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고와 최저 평균 차이는 평균 0.15로 나타났다.

## 2)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

참여동기의 각 요인별 참여 만족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문적기대’는 ‘교육내용 만족도’ 상관계수가 .6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방법만족도’ .477, ‘교육참여환경만족도’ .471, ‘직원서비스만족도’ .457, ‘교강사자세에 관한만족도’와 ‘학습동료와 상호작용만족도’ 상관계수가 .425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지향적 기대’는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상관계수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내용만족도’ .482, ‘직원서비스만족도’ .443, ‘교육참여환경만족도’ .383, ‘교육방법만족도’ .367, ‘교강사자세에 관한만족도’ .32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지향적 기대’는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상관계수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서비스만족도’ .399, ‘교육내용만족도’ .391, ‘교육방법만족도’ .285, ‘교육참여환경만족도’ .224, ‘교강사자세에 관한만족도’ .166 순으로 나타났다.

## 3)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참여동기의 각 요인별 생활 만족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문적기대’는 ‘교육적 영역’ 상관계수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영역’ .430, 끝으로 ‘진로 및 취업영역’ .351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지향적 기대’는 ‘사회적 영역’ 상관계수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영역’이 .465, ‘진로 및 취업영역’이 .4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지향적 기대’는 ‘진로 및 취업 영역’ 상관계수가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영역’ .542, ‘교육적영역’ .456순으로 나타났다.

## 4) 프로그램 참여자의 생활 만족도와 참여 만족도의 관계

참여 후 생활 만족도의 각 요인별 참여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영역’는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상관계수가 .49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직원서비스영역’ .345, ‘교육내용만족도’ .288, ‘교육방법만족도’ .212, ‘교육참여환경만족도’ .176, ‘교강사자세에관한만족도’ .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영역’은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 상관계수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서비스만족도’ .453, ‘교육내용만족도’ .432, ‘교육방법만족도’ .373, ‘교육참여환경만족도’ .320, 교강사자세에관한만족도’ .2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적영역’은 ‘교육내용 만족도’ 상관계수가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방법만족도’ .522, ‘직원서비스만족도’ .471, ‘학습동료와상호작용만족도’ .464, ‘교강사자세에관한만족도’ .461, ‘교육참여환경만족도’ .436 순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중심으로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 만족도 연구를 위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만족, 참여 만족도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내용으로 ‘거주지역’별로 ‘제주지역’의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남성’의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의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수입’별로 보면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으로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참여 만족도가 타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이 높은 이유는 제주지역만의 특성인 인적네트워크 형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연령층, 고소득층이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평생교육 참여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어 평생교육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참여 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 참여동기의 변인인 ‘학문적 기대’, ‘내부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에 대한 참여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문적 기대’는 ‘교육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지향적 기대’ 및 ‘외부지향적 기대’는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동기에 따른 ‘학문적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내용’으로서 지식이나 정보 습득, 학문적 욕구 충족, 개인적 당면과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부지향적 기대’ 및 ‘외부지향적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동료와 상호작용’으로서 학습동료와의 자주만남, 동료의식, 프로그램에 대한 동료와의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 있어 참여동기의 변인인 ‘학문적 영역’, ‘내부지향적 기대’, ‘외부지향적 기대’에 대한 참여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문적 영역’는 교육영역, ‘내부지향적 기대’는 ‘사회적 영역’, ‘외부지향적 기대’는 ‘진로 및 취업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 후 만족도에 있어서 학문적 기대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 습득, 학문적 호기심, 정규교육 부족으로 인한 보충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내부지향적 기대’에 있어서는 ‘교양함량, 나의 삶의 활력, 장래의 풍족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지향적 기대’에 있어서는 ‘취업, 승진 등 직업적 도움, 직장내 업무 효율성, 새로운 일이나 활동, 여가시간 활용, 사회에서 인정, 인간관계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따른 참여 만족도 관계에 있어 참여 후 생활만족도의 변인인 ‘진로 및 취업영역’, ‘사회적 영역’, ‘교육적 영역’에 대한 참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영역’, ‘사회적 영역’에 대해서는 ‘학습동료와 상호작용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적 영역’은 ‘교육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 후 생활만족도 ‘진로 및 취업영역’ 및 ‘사회적 영역’에는 ‘새로운 직장, 직장에서 승진, 출판, 전시회 등 작품발표,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육적 영역’에서는 ‘나의 목표와 일치, 사회생활을 하는데 긍정적 효과, 필요한 지식 정보 습득, 학문적 욕구 충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제언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중심으로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 만족도 연구를 위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참여동기에 따른 참여만족, 참여 만족도에 따른 참여 후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결론을 기초로 하여 추후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 지향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후속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립거점 대학 중심의 일부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접근과 참여동기 및 참여 만족도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담당자 대상으로 다각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 다양한 교육방식 개발에 따른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에 따른 교육집단의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소외계층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도 국가평생교육 통계조사
- 권두승 · 이경아(1999).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성인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 김승정(2008). 대학평생교육원 운영 사례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련(2004).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인희(1985). 교육서 교육철학강의. 서울:문음사.
- 김재곤(1998). 학교 교육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하(1996). 대구 경북지역 대학 사회교육기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준(2002).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2008).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와 교육기관 관련요인과 관계분석. 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성(2000). 학점이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2001). 지역사회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2010).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교육서비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국(2007). 평생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병순 · 이영호(2000).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원미사.
- 신은정(2010). 성인학습자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정(2012).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교육기관 경험이 교육만족도 및 참여지속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2004). 성인교육프로그램에서의 교육서비스만족도 관련요인에 관한연구. 중앙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원(2003).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참여지속 결정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의(1997). **대학사회교육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참여자의 배경특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2009).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수(2009).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실태와 학습자의 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실(1986). **성인교육유형에 따른 교육참여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운실 외(2005).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cesi.kedic.re.kr>). **평생통계**.
- 한상훈(2001). **대학평생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발전총론, 22(2), 79-101
- 한승진(2005). **대학평생교육학습자의 학습참여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 **A Study on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nd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lifelong learning centers at national universities -

**Kim, Mi Kyoung**

Major in Educatio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examining how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offered by lifelong learning centers at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affects adult learners' life satisfaction and finding ways to maximize their life satisfaction.

To this end, we first assess reason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program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Second, we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reason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program satisfaction and third, investigate life satisfaction after the programs according to reasons of participation. Fourth, we als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gram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following the program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analyzed what factors affect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reasons of particip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on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ed a research model to describe correlations of factors. In addition, to measure the factors, a questionnaire survey tested for reliability under the guidance of the supervising professor based on tools used for literature review wa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500 selected by random sampling from six point national universities nationwide which offe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Out of 396 survey sheets returned, we used 362 of them for final analysis, excluding 34 incomplete ones. Regarding the data for final analysis, we conducted a reliability test for measuring tools and a t-test and One-way ANOVA to analyze the difference among factors. We also performed a correlation analysis to assess participation satisfaction according to reasons of participation, life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on according to reasons of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on according to participation satisfaction.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like the place of residence, sex, age, education, and monthly average income, education according to reason of participation and the place of residence according to participation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while the rest of the factors were not. As far as participation satisfaction was concerned, it was higher among those living in Jeju and men rather than women. Regarding age, those in their 60s appeared to have highest satisfaction, and junior college graduates and those who earn 3 to 4 million won on average were found to be highly satisfied. The finding that older, high-income, and well-educated participants expressed higher satisfaction indicates that satisfaction of lifelong education grows higher among those who can afford to the programs in terms of money and time.

Second,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reasons and

satisfaction, we found that ‘academic expectation’ as a reason of participation affected ‘education content’ in participation satisfaction. Namely, ‘academic expectation’ was found to influence knowledge or information acquisition, satisfaction of academic desires, and ability to solve personal problems. ‘Internal expectation’ and ‘external expectation’ appeared to affect ‘interaction with other learners’ in participation satisfaction, therefore affecting frequent meetings with other students, fellow feeling, and building a consensus with other students regarding the programs.’

Third, when it com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reasons and life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on, ‘academic expectation’ as a participation reason was found to affect ‘education areas’ in life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on and ‘internal expectation’ influenced ‘social areas.’ In addition, ‘external expectation’ affected ‘career and employment area.’ Therefore, in relation to ‘academic expectation,’ follow-up education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erms of new information acquisition, academic curiosity, and lack of regular education, and ‘internal expectation’ was found to affect ‘cultivation of liberal arts, energy for life, and abundant life in the future.’ Furthermore, ‘external expectation’ influenced ‘career like employment and promotion, job efficiency, new work or activity, leisure tim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urth, in connection with the relationship to participation satisfaction according to life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on, in ‘career and employment area’ and ‘social area’ of life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ffected ‘satisfaction with interaction with other students,’ and ‘education area’ had an effect on ‘education content.’ Accordingly, ‘career and employment area’ and ‘social area’ were found to place importance over ‘new job, promotion at work, publication, exhibition, release of books, and chance of further education,’ while ‘education area’ affected ‘agreement with goals, positive effects on social lif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atisfaction of academic desires, and solution of personal problem

【부록1】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 만족도 및  
참여 후 생활 만족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국립대학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만족도 및 참여 후 생활 만족도 연구」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저의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국립대학평생교육원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어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료는 연구가 끝나는 2013년 8월 30까지 소각처리 되어 폐기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의 연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 박 정 환

석사과정 : 김 미 경

연 락 처 : 010-4516-0634

이 메 일 : [ari5132@jejunu.ac.kr](mailto:ari5132@jejunu.ac.kr)



## I.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참여 동기

다음 문항은 귀하가 다니는 평생교육원 학습프로그램 참여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생교육에 있어서 학문적 기대

항 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1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2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3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좋고 보람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4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5 정규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기 타 ( )					

### 2. 평생교육에 있어서 내부지향적 기대

항 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1 일상적인 교양함양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2 나의 삶에 활력을 얻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3 장래의 풍족한 삶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4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5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가 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기 타 ( )					

### 3. 평생교육에 있어서 외부지향적 기대

항 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1 취업, 승진, 전직 등 직업적 도움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2 직장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3 새로운 일이나 활동을 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4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5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6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7 인간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기 타 ( )					

## II. 평생교육에 있어 학습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4.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항 목	매 우 만족한다	만 족 한 다	보 통 이 다	불만족한 다	매우불만족한다
1 학습프로그램은 나의 목표와 일치한다.	5	4	3	2	1
2 학습프로그램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5	4	3	2	1
3 학습프로그램은 내가 원하는 바를 잘 반영하고 있다.	5	4	3	2	1
4 학습프로그램은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5	4	3	2	1
5 학습프로그램은 기대한 만큼의 학문적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	5	4	3	2	1
6 학습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5	4	3	2	1

### 5.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방법 만족도

항 목	매 우 만족한다	만 족 한 다	보 통 이 다	불만족한 다	매우불만족한다
1 전체적인 교육방법에 만족하다.	5	4	3	2	1
2 교재가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다.	5	4	3	2	1
4 교재내용이 학습자 발달에 따른 관념과 지식수준에 알맞도록 구성되어 있다.	5	4	3	2	1
5 참여중인 프로그램의 교수방법이 적절하다.	5	4	3	2	1
6 수업참여에 관한 이해확인과 보충설명 제시가 충분하다.	5	4	3	2	1
7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생략하여 설계되었다.	5	4	3	2	1

### 6. 평생교육에 있어서 참여 환경 만족도

항 목	매 우 만족한다	만 족 한 다	보 통 이 다	불만족한 다	매우불만족한다
1 강의실의 전반적인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다.	5	4	3	2	1
2 주차장이나 매점, 식당 등 부대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5	4	3	2	1
3 강의실 분위기는 진지하고 학구적이다.	5	4	3	2	1
4 학습자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충실한 편이다.	5	4	3	2	1
5 교육기관에서 대해서 학문적 분위기에 만족한다.	5	4	3	2	1

### 7. 평생교육에 있어서 교강사 자세에 관한 만족도

	항 목	매 우 만족한다	만 족 한 다	보 통 이 다	불만족 한 다	매 우 불만 족한다
1	교강사는 학습자의 욕구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5	4	3	2	1
2	교강사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5	4	3	2	1
3	교강사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5	4	3	2	1
4	교강사는 학습자의 지적 성장을 돕는데 관심이 많은 편이다.	5	4	3	2	1
5	교강사는 담당 교육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	5	4	3	2	1
6	교강사의 수업 진행방식이 합리적이다.	5	4	3	2	1
7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잘되는 편이다.	5	4	3	2	1
8	교강사가 개설하는 다른 강좌도 수강하고 싶다.	5	4	3	2	1

### 8. 평생교육에 있어서 학습동료와의 상호작용 만족도

	항 목	매 우 만족한다	만 족 한 다	보 통 이 다	불만족 한 다	매 우 불만 족한다
1	강의시간 이외에 동료 학습자와 자주 만나는 편이다.	5	4	3	2	1
2	개인적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동료 학습자가 있다.	5	4	3	2	1
3	새로운 강좌를 등록할 때 함께 참여할 동료 학습자로부터 찾는다.	5	4	3	2	1
4	동료 학습자에게서 일체감이나 동료의식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	5	4	3	2	1
5	동료 학습자와 프로그램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주 이야기 하는 편이다.	5	4	3	2	1

### 9. 평생교육에 있어서 직원 서비스 만족도

	항 목	매 우 만족한다	만 족 한 다	보 통 이 다	불만족 한 다	매 우 불만 족한다
1	교육정보에 대한 안내가 다양하게 잘되어 있다.	5	4	3	2	1
2	전화 및 방문 시 친절하게 응대 해 준다.	5	4	3	2	1
3	학습자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여 준다.	5	4	3	2	1
4	학습자들을 적절히 격려하고 신뢰를 준다.	5	4	3	2	1
5	이 기관의 학습 시설과 기자재 이용 편의성에 만족한다.	5	4	3	2	1

### Ⅲ. 평생교육 참여 후 생활만족도

#### 10. 평생교육 참여 후 진로 및 취업 영역 만족도

항 목	매우 만족한다	만족 한다	보통 이다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1 새로운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2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보수를 더 받는 계기가 되었다.	5	4	3	2	1
3 개인, 가정 등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4 출판, 전시회 작품발표회 등을 통해서 진가 더 확대되었다.	5	4	3	2	1
5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대학, 대학원 등 진학)	5	4	3	2	1

#### 11. 평생교육 참여 후 사회적 영역 만족도

항 목	매우 만족한다	만족 한다	보통 이다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1 예전보다 동료 주변 사람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게 되었다.	5	4	3	2	1
2 타인들과 관계 맺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5	4	3	2	1
3 사회활동에서 내가 배운 학습 경험을 적용할 때가 많다.	5	4	3	2	1
4 나는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	4	3	2	1
5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5	4	3	2	1

#### 12. 평생교육 참여 후 교육적 영역 만족도

항 목	매우 만족한다	만족 한다	보통 이다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1 내가 지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5	4	3	2	1
2 남의 권유나 지시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는 능력이 생겼다.	5	4	3	2	1
3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갖게 되었다.	5	4	3	2	1
4 삶에 대한 목적과 가치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5	4	3	2	1
5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5	4	3	2	1

#### IV.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방식

다음 문항은 귀하가 다니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는 주 몇 회 정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가를 선호하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

  2. 귀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1회 참가시 몇시간을 선호하십니까?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④ 4시간    ⑤ 5시간 이상

---

  3. 귀하는 지금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총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3~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이상~2년미만    ④ 2년이상~3년미만

---

  4. 귀하는 앞으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① 기회가 되면 더 배우고 싶다 ( )    ②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 ( )  
 ③ 교육횟수를 줄이고 싶다 ( )    ④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다 ( )

---

  5.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은 어느 정도의 기간 단위로 제공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① 1주 미만    ② 1주 이상 ~ 1개월 미만    ③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④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

  6. 수강하기 적당한 교육시간대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평일 오전 ( )    ② 평일 낮 ( )    ③ 평일 저녁 ( )    ④ 주말 낮 ( )    ⑤ 주말 저녁 ( )    ⑥ 기타 ( )

---

  7.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항목 체크 가능)  
 ① 교육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하다    ② 전반적으로 교육방법에 만족한다  
 ③ 프로그램 운영시 학습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다  
 ④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다른 교육기관보다 이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더 우수한 편이다
- 

#### V.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문항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2. 성별	① 남	② 여	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⑤ 70대 이상						
4.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미혼	5. 직업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영업직	④ 자영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무직	⑨ 기타( )				
6. 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학졸    ⑤ 대학원졸 이상										
7. 월평균수입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8. 현재 다니고 계신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참여하는 강좌(프로그램)수는 몇 개 강좌입니까?				개							
9. 지금까지 참여한 전체 평생교육 강좌(프로그램) 수는?				개							
10. 귀하께서 현재 참여하고 계신 프로그램명은 무엇입니까? (현재 참여하고 계신 프로그램 전부 기재)											

---

감 사 합 니 다.\

## 【부록2】

### 평생교육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73, 637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



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



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3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2조제4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

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